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2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9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섬유의 제도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기섬유제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유리섬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2020. 4. 30.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20. 5. 4. 기준 C에 대하여 3,746,771,46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C가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전자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2020. 5. 4. 부도처리되었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지급보증서를 실행하여 14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3,606,771,464원(= 3,746,771,464원 - 140,000,000원)이 남았다.

라. 피고와 C는 2020. 5. 4. C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별지 기재 채권 331,943,86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C는 D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D은 피고에게 2020. 6. 1.부터 2021. 5. 10.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1,872,815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0. 6. 17. C가 D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9.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의 D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6. 24.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248)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5. 4. 기준 3,606,771,46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C가 발행하여 원고를 포함한 납품업체들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중 만기일이 2020. 4. 30.인 전자어음이 2020. 5. 4. 예금 부족으로 지급거절(당좌부도) 되었다. C가 이후 발행한 약 50건의 전자어음도 지급거절 되었으며, C는 2020. 5. 7. 위 당좌부도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 ② C는 2020. 5. 7. 금융기관에 대한 149,000,000원의 대출원금 및 이자채무를 연체하였고 2020. 5. 6.부터 2020. 10. 26.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액이 약 120억 원에 이르렀다.
- ③ C는 2020. 5. 4. 자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하여 주었는데 위 각

양도채권액은 자신의 채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점, 2019년 말 기준 C의 유동자산은 대부분 매출채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위 각 채권양도 당시 이미 변제 자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C에게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 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있었고 2019. 12. 31. 기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은 약 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금융기관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C가 발행한 전자어음은 C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이후 전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이후 C에 대한 위 거래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C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법리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 일부에게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20. 5. 4.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에 따라 C가 갖는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해주었고, 원고는 피고와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C가 원고, 피고 등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일부씩 양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 중에는 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가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들도 그들의 채권액에 정확히 비례하여 채권을 안분 양도받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C에 의한 또 다른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③ C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그 경위나 목적에 있어서 사해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관련법리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C는 2020. 5. 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무자력 유무를 알지 못하는 등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거절된 2020. 5.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C가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

1) 관련법리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전부 변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변제로서 양도대상 채권이 소멸하여 그 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1,9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진하, 판사 이고은

별지